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67

발의연월일: 2021. 4. 1.

발 의 자:이철규·서정숙·박덕흠

배준영・김용판・구자근

권성동 • 윤영석 • 홍석준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음.

세제 감면 대상에 배기량 제한을 둔 것은 배기량이 큰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세제를 감면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장애인은 자동차에 휠체어 등 보조장비를 싣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반드시고급 자동차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배기량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3천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세

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4항제1호).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3천시시"로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3천시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 1호가목 및 제29조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①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	
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	
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	
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	
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	
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u>2천시시</u> 이하인	가 <u>3천시시</u>
승용자동차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제29조(=
면) ① ~ ③ (생 략)	면) ①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u>4</u>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	
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	
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	
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	
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u>2천시시</u> 이하인 승용자동차

네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4
1
ا ا ا ا ا ا ا
가 <u>3천시시</u>

나.・다. (생 략)나.・다. (현행과 같음)2. ~ 4. (생 략)2. ~ 4. (현행과 같음)⑤ (생 략)⑤ (현행과 같음)